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연료의 범위,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선박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그 밖에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나.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규정(안 제3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및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으로 규정

다. 녹색해운항로의 고시사항 규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항로의 명칭,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으로 정하고,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에는 선종 및 동력원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라.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의 범위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료로 규정

마.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6조)

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간사의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으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선박의 종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메탄올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2. 수소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3. 암모니아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및 마목에 따른 연료전지추진선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선박이라고 인정하는 선박

제3조(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친환경선박연
료공급업을 통하여 녹색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춘 항만
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육상전
원공급설비 또는 선박의 동력원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항만

제4조(녹색해운항로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항로의 명칭
2.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3. 선종 및 동력원. 다만,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사항을 변경하거나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
색해운항로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의 범위) 법 제7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연료를 말한다.

제6조(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 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4. 지원협의체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회의의 재적위원 정수는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역의 위원만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개의 및 의결은 해당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
2.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